

# 보건복지 소식 광장



# 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2년 6~7월 보도자료([http://www.mohw.go.kr/front\\_new/al/sal/0301ls.jsp?PAR\\_MENU\\_ID=048&MENU\\_I=0403]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=0403)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## I

### 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·디지털헬스 글로벌 도약 추진

-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-
- 의료 마이데이터, 디지털 헬스케어, 빅데이터 개방 등 국정과제 신속 추진 -

■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(월) 14시 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‘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심의위원회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- ‘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’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,
  -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바이오·디지털헬스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각 분야\*를 대표하는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,
- 이날 회의는 제1기(’22.6~’24.6)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,
- 위원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▲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, ▲ 임상데이터 네트워크(K-CURE\*) 사업 추진계획, ▲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

\* Korea-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 : 의료데이터 중심병원,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 및 개방

■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 >

-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공급자·치료 중심에서 환자·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.

<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>

과거·현재	미래
치료 중심	예방·건강관리 중심
공급자 중심	수요자(환자) 중심
의료 투입량에 주목	의료 결과에 주목
분절적 의료 제공	상호협력적 의료 연계
ICT 기반 업무 자동화	AI·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해 법·제도를 정비\*하고 국가 차원의 '디지털헬스 혁신 전략'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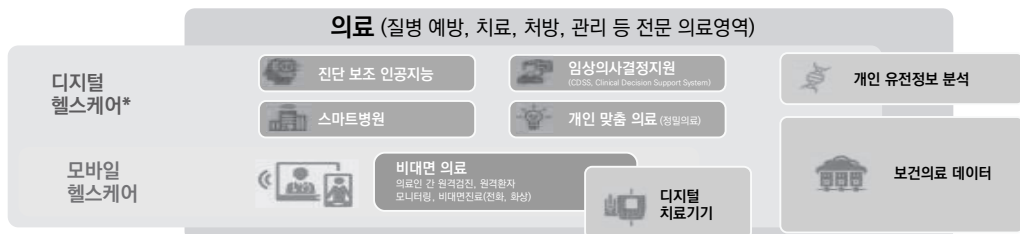
\* (美) 21세기 치료법, (日) 차세대의료기반법, (獨) 디지털헬스케어육성법(DVG) 등

-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, 국가적 신산업의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.

◆ 디지털헬스케어란?

- '디지털 헬스케어'는 헬스케어(의료 + 건강관리) 분야에 데이터, 네트워크, 인공지능(D.N.A)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활용되는 형태
- ☞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와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의료서비스에 활용하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핵심 분야

<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 >



\* 의료 및 건강관리(웰니스)에 데이터, 네트워크, 인공지능(D.N.A)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는 형태

■ 이에 현 정부에서도 정부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웠다.

〈 국정과제 25. 바이오·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中 〉

- (디지털 헬스)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·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‘건강정보 고속도로’ 시스템을 구축하고, 맞춤형으로 제공
  - 의료 마이데이터,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
- (빅데이터)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,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

■ 앞으로 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,

- ①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, ②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, ③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
- 또한, 긴밀한 민·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헬스케어·보건의료데이터 신법 제정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.

■ 복지부는 ‘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’ 수립을 계기로 이해관계자(의료계·산업계·환자단체 등)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,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.

〈 임상데이터 네트워크(K-CURE) 사업 추진계획 〉

■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 극복을 위해,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자 임상데이터 네트워크(K-CURE\*) 추진계획(‘22년~’25년)을 발표하였다.

■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과 통계청, 국립암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암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·연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한다.

○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총 40개 의료기관은 국가 암등록통계,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대상으로 표준화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, K-CURE 포털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한다.

- 구체적으로, 임상의·의료정보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 표준화·품질관리, 구축·활용 분과를 운영하여 연구 활용가치가 높은 표준항목정의서를 개발하고, 주요 호발암 10종\*에 대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\* (22.) 위암, 유방암/ (23) 대장암, 간암 (24) 췌장암, 폐암, 전립선암 / (25) 자궁경부암, 신장암, 혈액암

○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 등록환자 총 450만 명의 국가검진, 청구, 사망원인정보를 암관리법에 따라 수집하고,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결합한 전주기 이력관리형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.

- 이를 위해, K-CURE 사업 참여 공공기관은 “K-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(MOU)”을 체결하여, 암 공공 데이터 활용 선순환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였다.

\* (22.6.27(월), 대한상공회의소) 보건복지부, 통계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립암센터, 한국보건 의료정보원

○ 또한, 의료기관 임상데이터,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와 사망정보 결합서비스\*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.

\* 의료기관 임상정보와 통계청 사망원인정보 결합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자가 데이터 활용분석을 희망하는 안심활용센터에 임상-사망원인정보 결합데이터 제공

- 올해 하반기 내 중앙센터 1개소, 지역센터 2개소를 개소하고,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설치·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'23년부터 안심활용센터 지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.

\* 중앙센터(K-CURE 사무국 운영), 지역센터(22년 공모·선정, 시범운영) / 지정제 도입('23년~)

■ 향후, 암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의 선도모델로서 성과확산을 위해 기존 암 이의 심뇌혈관, 호흡기 등 한국인 특화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
#### 〈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〉

■ 개인정보보호의 대원칙 아래,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구성에 따른 새로운 관리체계 방안 등에 논의하였다.

○ 의료 마이데이터는 국민 각자가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▲ 모바일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·확인하고, ▲ 원하는 곳에,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생태계를 말한다.

- 이를 통해 ① 국민의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, ② 개인·가족 맞춤형 진료강화, ③ 기존 각종 서류발급 등 병원 행정업무의 디지털화, ④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방침이다.

- 참석자들은 본인의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,

-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 의욕을 저해시키지 않는 민간과 공공 간 슬기로운 역할분담을 특히 강조하였다.

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“우리 부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하여 전 국민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것”임을 강조하면서,

○ “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580.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2022.6.27.

II

**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.**

-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, 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월평균 2만 2,000원 보험료 인하 -

■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6월 28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시행령 개정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(제16728호, 제18895호, '22.7.1. 시행)으로 지역가입자\*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, 이를 평가하여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\*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, 지역가입자(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, 일용근로자, 특수고용직, 은퇴자 등)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

〈「국민건강보험법」 관련 개정 조항〉

제72조(보험료부과점수)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(이하 “금융회사등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■ 올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① (대상자) 1세대 1주택 세대와,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,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를 준용한다.

-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.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,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.

-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.

② (대상주택)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(재산과표 3억)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,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~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.

※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: 71.5%(’22., 국토교통부)  
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비율 : 63.8%(’22.4., 「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」, 한국부동산원)

- 신청 당시 공시가격\*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,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.

\* 1~10월 : 작년 공시가격 기준, 11월~12월 : 올해 공시가격 기준

③ (대상 대출) 지역가입자가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.(개인간 부채(사채)는 제외)

- 구체적으로,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, 보증자리론이 적용되며,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, 전세자금(보증서, 질권 등) 대출,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.

- 아울러,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(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)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.

※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,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.

④ (공제 방식)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, 대출잔액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.

(1) 1세대 1주택 세대

- 대출금액의 합에 60%를 곱하여 평가,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,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(2) 1세대 무주택 세대

- 대출금액의 합에 30%를 곱하여 평가, 다만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1억 5,000만 원(대출원금 기준 5억까지)까지만 공제된다.

- 부채에 일정 평가비율(1세대 1주택 60%, 무주택 30%)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동일한 방식이다.

※ 가령, 공시가격 3억 주택의 경우, 건강보험료 재산과표는 60%를 곱한 1억 8,000만 원



-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제 상한액(평가 후 부채 5,000만 원)을 설정하였는데,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.
- 다만,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,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,000만 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.

⑤ (정보 연계)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, 금융기관·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.

-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,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다.

※ 관련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2조제3항 및 제96조의2개정(법률 제18895호, '22.6.10. 공포)

- 1·2금융권\*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으므로,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
\* 1금융권(은행), 2금융권(증권사, 보험사, 저축은행, 농협 등), 3금융권(대부업체 등)

-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\*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.

\* (입증 필요사항) 대출된 금액이 주택의 전 소유자 또는 분양사업자 및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,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

□ [사례 1] 1세대 1주택(시가 3억, 공시 2억, 과표 1.2억) 세대로서,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:

월 95,460원 → 70,620원

- (현재) 재산 과표 1.2억 원으로, 기본 공제 500만 원 후, 재산 보험료로 월 95,460원 부과
- (부채공제 여부) 1세대 1주택 세대로서, 공시가 5억 원 이하이며,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
- (공제 후) 부채 평가액은 1억 원에 60%를 곱한 6,000만 원이며, 자가 세대이므로 5,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
  - 재산과표 1.2억 원에 기본 공제 500만 원과 부채 공제 5,000만 원 공제 후 재산 과표 6,500만 원 → 재산 보험료로 월 70,620원 부과

- [사례 2]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, 보증금 2억,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 거주중,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1억 8천만 원 : 월 65,690원 → 4,510원
- (현재) 재산 과표는 6,600만 원((2억+50만 원×40)×30%), 기본 공제 1,000만 원을 받고 난 뒤 재산보험료로 월 65,690원 부과
- (부채공제 여부)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,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며, 전세자금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
- (공제 후) 부채 평가액은 1억 8,000만 원에 30%를 곱한 5,400만 원이며, 무주택·임차 세대이므로 보증금 5억(평가 후 1억 5,000만 원)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 가능
  - 재산과표 6,600만 원에 기본 공제 1,000만 원과 부채 공제 5,400만 원 공제 후 재산과표 200만 원 → 재산 보험료로 월 4,510원 부과

■ '22년 7월 1일부터공단 누리집(www.nhis.or.kr), “The 건강보험”(모바일 어플리케이션) 및 공단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※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공단지사에서 신청 필요

■ 신청 내용은,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·심사 된 후에 심사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다. 접수·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,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.

※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법률 제16728호 부칙 제4조(법률 제18895호, '22.6.10. 공포)

■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“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.”며

○ “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되었다.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.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581.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2022.6.28.

Ⅲ

**직장인, 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**

- 7월 4일(월)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시작 -  
 -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·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,960원 지급 -

-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,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(월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상병수당이란,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·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.
  - 상병수당은 부상·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,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.
    - 또한,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.
-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,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.
  -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,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.
    -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, 평균 지원기간,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·분석하고,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.
  - 시범사업 ①(모형 1)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, ②(모형 2)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, ③(모형 3)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.
  -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,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·지원한다.
-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,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.

## 1.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

■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\*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.

\*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, 난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
○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, 특수고용직 노동자\*, 플랫폼 노동자,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.

\* 예)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학습지교사, 택배기사, 건설기계조종사 등
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,

-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\*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.

\*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 9,160원 x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

○ 다만,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'협력사업장' 근로자의 경우,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.

\*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,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(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)

○ 다만, 고용보험 실업급여·출산전후휴가급여·육아휴직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,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·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## 2. 부상·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

■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, 부상·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○ 다만,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,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, 출산\*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\*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·수급 가능

- 구체적인 부상·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,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%인 4만 3,960원을 지급한다.

〈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(요약) 〉

- (모형 1)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(입원·외래·재택요양)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, 대기기간 7일, 최대 보장기간 90일
- (모형 2) 모형1과 동일하되, 대기기간 14일, 최대 보장기간 120일
- (모형 3)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, 대기기간 3일, 최대 보장기간 90일

구분	모형1	모형2	모형3
입원 여부	제한 무(無)	제한 무(無)	입원
급여	근로활동 불가기간	근로활동 불가기간	의료이용일수
대기기간 / 최대보장	7일/90일	14일/120일	3일/90일
지역	부천시, 포항시	종로구, 천안시	순천시, 창원시

3.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

〈 모형1 : 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 〉

- (모형1)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(입원·외래·재택요양)과 관계없이 부상·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, 대기기간\* 7일

\* (대기기간)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

-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,960원 지급, 최대 보장 기간 90일

- 취업자는 부상·질병이 발생할 경우,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\*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「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」를 발급받아야 한다.

\*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www.nhis.or.kr)에서 확인 가능

-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\*를 발급받는다.

\*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,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,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,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 미지급

- 의료기관 진단서,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,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,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 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.
-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「근로중단확인서」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.
  -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 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,960원이 지급된다.
  -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,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,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.

□ [사례1] A씨,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, 대기기간 7일

- 상병수당 : (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- 대기기간 7일) × 4만 3,960원 = 57만1,480원

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																			
대기기간 7일							상병수당 수급기간 13일												

□ [사례2] B씨, 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, 대기기간 7일, 사업장 유급병가 15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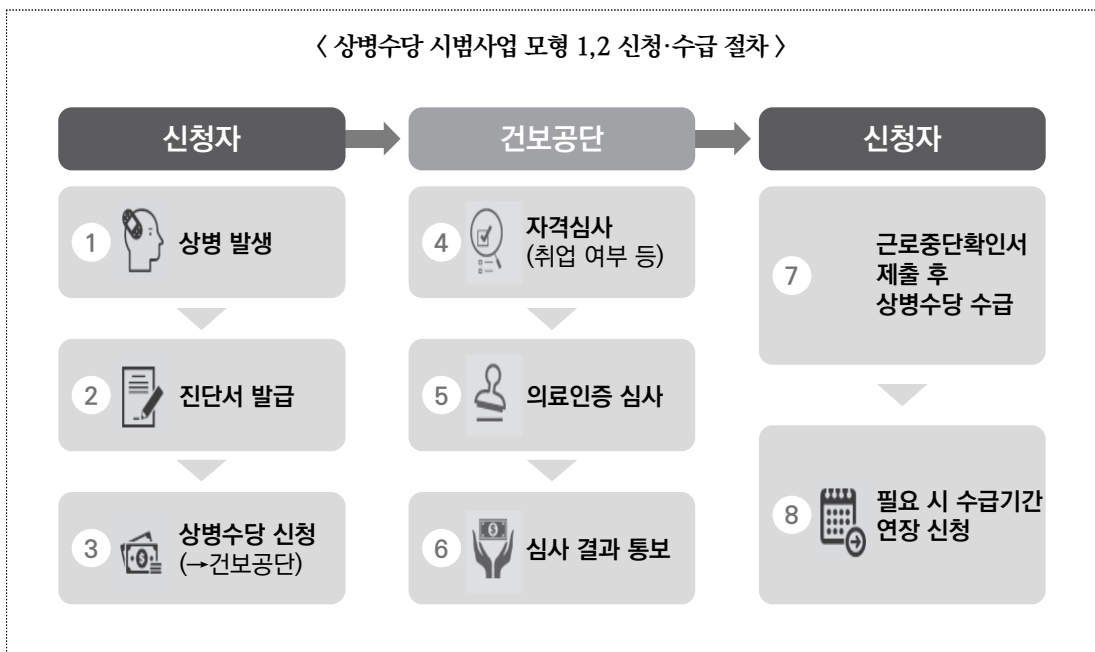
- 상병수당 : ((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 - 대기기간 7일) - 유급병가 중복기간 8일) × 4만 3,960원 = 21만 9,800원

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근로활동불가기간 20일																			
대기기간 7일							사업장 유급병가기간 15일								상병수당 수급기간 5일				

○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·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, 1년간 최대 90일(최대 보장 기간)까지 지급된다.

- 하나의 부상·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동일한 부상·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\*할 수 있다.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.

\*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



**< 모형2 :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 >**

□ (모형1)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(입원·외래·재택요양)과 관계없이 부상·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, 대기기간\* 14일

\* (대기기간)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

-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,960원 지급, 최대 보장 기간 120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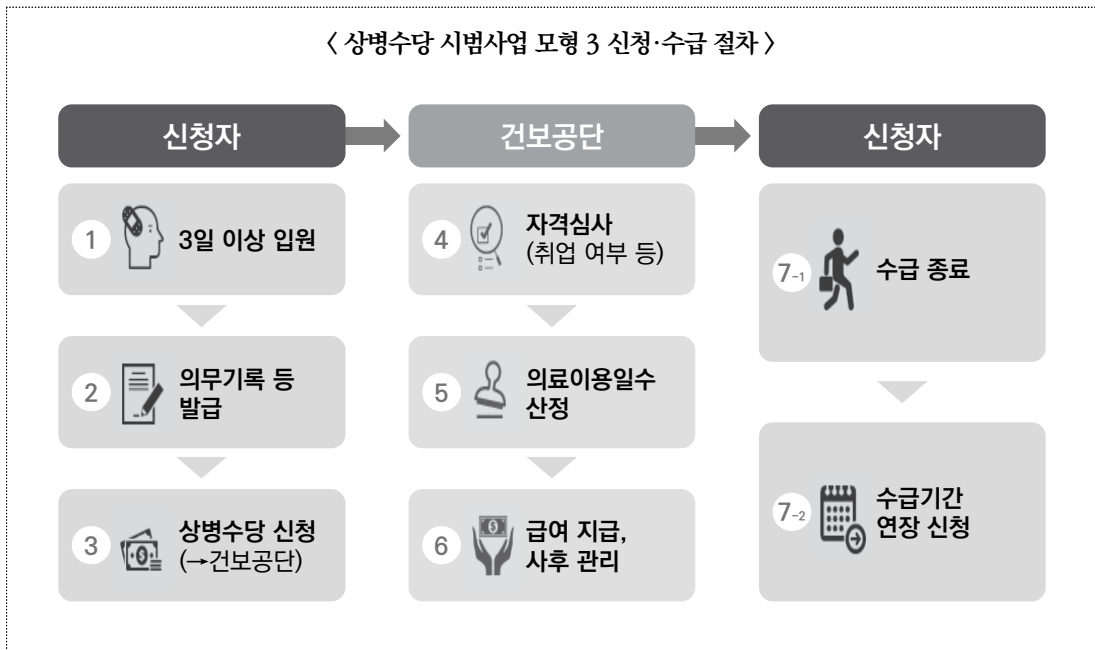
- 모형 2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의 경우,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「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」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.

〈 모형3 : 경남 창원시, 전남 순천시 〉

- (모형3)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(대기기간 3일)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의료이용일수)에 대해 급여 지급
  -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,960원 지급, 최대 보장 기간 90일

- 모형 3 (경남 창원시, 전남 순천시)의 경우, 취업자는 부상·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.
    - 해당 부상·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,960원을 받을 수 있다.
  -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,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‘근로중단확인서’를 받는다.
    -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  -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.
  -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·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 이용을 하였다면 연장 신청\*할 수 있으며,
    - 다른 부상·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하여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,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.
- \* 연장신청의 경우 대기기간 요건을 다시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





■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(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)에서 '상병수당'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.

○ 또한,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(☎1577-1000)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.

#### 4. 협력사업장 및 참여 의료기관

■ '협력사업장'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,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.

○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(6.30일 기준)로,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.

○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.

-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▲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·근로 복귀계획 수립, ▲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, ▲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.

○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,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「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」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, 시범사업 모형 1,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\*에서 총 223개\*\*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하였다.

\*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경북 포항시

\*\* 상급종합병원 2개, 종합병원 13개, 병원 24개, 의원 184개 등록 (6.28일 기준)

○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,000원\*이다.

\*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, 추후 상병수당과 함께 진단서 비용 환급

-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%, 연장신청서는 50%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.

○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\*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.

\* 추후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연구지원수당 지원 여부 및 금액 변동 가능

○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,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.

-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■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,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■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“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”이라고 말하며,

- “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,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.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600.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2022.7.3.

## IV

###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한다!

- 돌봄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14% 확대 -

-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‘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’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 - ‘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’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, 일정 소득 기준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\*)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,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(서비스 이용료 : 시간당 4,510원)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  - 다만,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크에도 불구하고,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\*(연간 840시간)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.
  -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하여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(14.3%)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,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\*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\* 2022년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인원 : 8,005명

-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,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·구에 방문하여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·가무원·대리인도 가능하다.

■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면서,

-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**참고 1** 중증장애아동 돌봄 사업(장애아가족 양육지원) 개요

- (목적) 장애아 가족 구성원에게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및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
- (사업규모) 48,419백만 원, 8,005명, 연간 840시간 ('22년)
- (사업대상)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, 중위소득 120% 이하 시 본인부담금 없이 100% 정부 지원
  - '22년부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가정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\*

\* 소득 기준 초과 시 본인부담률 40%(시간당 이용요금 4,510원)

- 연도별 예산 및 지원현황

연도	예산 (백만원)	지원인원(예산기준)	돌봄시간(연)
2018	11,277	3,725	528
2019	17,186	4,005	600
2020	20,873	4,005	720
2021	21,562	4,005 *5,005(8월 이후)	720 *840(8월 이후)
2022	48,419	8,005	840

\* '21년 기정예산 활용(3,775백만 원)하여 지원인원(+1,000명) 및 돌봄시간(+120시간) 확대(지원인원) 4,005명 → 5,005명, (돌봄시간) 연 720시간 → 연 840시간

○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

구분	주체	내용
신청	본인 및 가족 (가구원, 대리인 신청 가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</li> </ul>
↓ 상담 및 조사	장애인복지담당 (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</li> <li>• 조사결과를 행복e음을 입력·등록</li> </ul>
↓ 대상자 선정 및 통지	장애인복지담당 (시·군·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 및 결과 통지(보호자, 사업시행기관)</li> </ul>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615.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022.7.8.